- 2025년도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

한국철도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철도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5월 27일

〔출연기업〕 한국철도공사

〔전담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기관〕 한국생산성본부

1 사업개요

○ **(프로그램명)** 2025년 한국철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프로그램

○ **(지원기간)** 사업선정일 ~ 2025.11.14

○ **(지원대상)**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②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 **(우대사항)**

① 한국철도와 협력관계(철도상생클럽 회원사,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기술개발, 거래 등)에 있는 중소기업

② 해외판로개척 계획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해외인증, 해외 박람회 참여, 해외수출 실적 등

○ **(지원내용)**

①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 지원(10%)

② 철도산업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템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90%)

○ **(지원규모)** 기업당 약 10백만원(20개社)

- 맞춤형 기업진단(10%) + 사업화 지원 등 직접지원(90%)

* 회계정산비 포함

○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사업화 지원금 선 지급 후 회계정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 05. 30.(금) ~ ’25. 6. 18.(수) 18시까지

* 신청기간은 지원기업 모집 현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스캔본 제출

○ 이메일(kpcstartup2@gmail.com) 접수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kpcstartup2@gmail.com, 02-398-6425)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⑥ 관련 업종분야 특허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3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 추진일정

지원기업 공모 시행 (한국철도/생산성본부)	⇨	지원기업 선정평가 (생산성본부)	⇨	선정기업 통보 / 사업비 지원 (생산성본부)	⇨	사업수행 (지원기업)	⇨	회계정산 (회계기관)
(~'25. 6월 중순)		(~'25. 6월말)		(~'25. 7월)		(~'25. 11월)		('25. 11월)

* 해당일정은 공사 및 협력재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종료 이후,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환수 추진

□ 유의사항

○ 선정된 자는 공고문 및 지침, 기타 전담기관(협력재단)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공사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정보수집 이용동의서(양식) 1부. 끝.

참 고 지원 프로그램 유형

지원유형 예시

○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개발 능력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게 신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을 통한 지원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

* (지원항목) 외주 용역비, 재료비, 전문가 활용비, Test-Bed 지원, 기술보호지원 등

○ **(인력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과 구인난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에게 일자리 매칭 지원

⇒ 교육을 통한 임직원의 역량 강화 및 지원기업에 필요한 일자리 매칭을 통한 인력 수급 어려움 해소

* (지원항목) 기술·경영 교육훈련비, 신규채용 인건비, 취업장려금 지원 등

○ **(판로확대)** 전시회 참여, 홍보자료 제작 등 국내외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창업·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통한 매출 확대

* (지원항목) 광고선전비,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pitching), 출장비 지원 등

○ **(생산성 향상)** 시험분석, 인증, 소프트웨어 구입, 설비 구축비 지원 등 제품 생산성 증대를 위한 비용 지원

⇒ 표준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 및 품질 제고

* (지원항목) 컨설팅을 포함한 시험·인증비, 기계 설비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